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1. 2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1.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11.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및 지방의정관리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총 정원 : 1,897 → 1,906명(+9)

• 집행기관 : 1,872명 → 1,880명(+8)

• 의회사무기구 : 25명 → 26명(+1)

○ 집행기관 정원 조정내역

• 증원인원 : 9명

– 일반직 : 1명(전기7급 : 1)

– 기능직 : 8명(기계6급 : 1, 기계7급 : 3, 전기7급 : 1, 전기8급 : 1, 기계8급 : 1, 기계9급 : 1)

• 감축인원 : 1명

– 일반직 : 1명(행정8급 : 1)

○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내역

• 증원인원 : 1명

– 일반직 : 1명(행정8급 : 1)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897명	1,906명	+ 9
집 행 기 관	1,872명	1,880명	+ 8
의 회 사 무 기 구	25명	26명	+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까치울정수장의 정원은? ○ 의회인원 조정이 까치울정수장 정원 승인 과는 배치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p>	<p>○ 정원은 53명임 ○ 아님</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6호
의결년월일	2001. 11. 13 (제91회)

제출년월일 : 2001. 11.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및 지방의정관리 전담인력 보장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총 정원 : 1,897 → 1,906명(+9)
 - 집행기관 : 1,872명 → 1,880명(+8)
 - 의회사무기구 : 25명 → 26명(+1)
- 집행기관 정원 조정내역
 - 증원인원 : 9명
 - 일반직 : 1명(전기7급 : 1)
 - 기능직 : 8명(기계6급 : 1, 기계7급 : 3, 전기7급 : 1, 전기8급 : 1, 기계8급 : 1, 기계9급 : 1)
 - 감축인원 : 1명
 - 일반직 : 1명(행정8급 : 1)

-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내역
 - 증원인원 : 1명
 - 일반직 : 1명(행정8급 : 1)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897명	1,906명	+ 9
집 행 기 관	1,872명	1,880명	+ 8
의 회 사 무 기 구	25명	26명	+ 1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97명”을 “1,90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872명”을 “1,880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일반직 31(5급 : 1, 6급 : 2, 7급 : 10, 8급 : 18), 기능직 41(7급 : 5, 8급 : 11, 9급 : 10, 10급 :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897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72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5명</u> 부 칙 (2000. 9. 25 조례 제1773호)	제2조(정원) <u>1,906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80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6명</u> 부 칙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삭제)

[표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6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3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표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89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87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 [일반직 31(5급 : 1, 6급 : 2, 7급 : 10, 8급 : 18), 기능직 41(7급 : 5, 8급 : 11, 9급 : 10, 10급 :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